

대구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329688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3296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79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79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효력이 상실된 종전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임차권등기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피고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문제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최종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특약사항에 ‘종전 임대차계약서와 연결’이라는 내용과 함께 종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전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 임대차보증금 증액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로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준철, 판사 김승섭